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나681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문현돈, 박진호, 이선숙, 이준서, 문병규, 백화

명, 최성대, 민경택, 윤도연, 허반석, 이미영

피고, 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하나, 명노승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17.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8가단5115347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74,997,75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190,976,816원 및 그 중 186,540,289원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나머지 4,436,527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74,997,75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190,976,816원 및 그 중

186,540,289원에 대하여는 2018. 8. 24.부터 2018. 8.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나머지 4,436,527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2020. 3.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2016. 8. 16. 위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9. 위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투자매장(인큐베이터)지원에 관한 추가약정을 하였다.

나. D은 2016. 8.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1억 6,000만원, 보험기간 2016. 9. 1.부터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위 투자매장지원에 관한 추가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1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F, 보험가입금액 2억원, 보험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위탁대리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및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제2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F에게,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8. 4. 25. 1억 5,000만원,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8. 8. 23. 186,540,289원, 2018. 12. 30. 3,690,618원, 2019. 9. 10. 745,909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 9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8. 20. F에게, 보증한도 5억원, 보증기간 3년으로 정하여, D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F와의 거래에 대한 상품대금채무, 공과금채무, 수수료반환채무,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지원금 관련한 채무, 기타 거래약정에 의한 채무, 위 거래와 관련된 어음 및 수표채무와 기타 채무자가 위 거래와 관련하여 F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거래기간 중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기본채무, 구상채무, 보증채무, 인수채무, 손해배상채무,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현물반환채무, 세무상 발생하는 의무 및 부대채무 등을 포함)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갑 제15호증).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이 제1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후 2018. 5. 2. D로부터 4,5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의 1/2에 해당하는 74,997,750원[(1억 5,000만원-4,500원) × 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6. 8. 20. 원고에게 D이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제1심 공동피고 E와 함께 연대보증하였고(갑 제7호증의 2),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이 제2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90,976,816원(186,540,289원 + 3,690,618원 + 745,9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갑 제7호증의 2, 갑 제15호증은 B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피고는 갑 제7호증의 2 기재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갑 제15호증 역시 피고가 작성한 바 없고 다만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B에게 사실상 피고 소유 차량인데 G에게 명의이전이 되어 있던 차량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 주고, G에게 빌려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달라고 부탁한 상태였고, B이 사실상 운영하는 D의 이사가 되기로 하였기 때문에 B이 제시하는 서류에 내용도 모르고 아무 의심 없이 인감도장을 날인한 기억이 있을 뿐이다. B이 피고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인인증서 등 차량이전을 위해 전달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의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매도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차량 명의이전 서류 혹은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서류에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갑 제15호증에 날인한 것이다.

다. 판단

(1) 제1보증보험계약 관련 구상금 청구

갑 제15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707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감정인 H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15호증의 인영은 피고의 인감도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인바, 그 인영은 작성명의인인 피고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고, 그 결과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피고가 B에게 차량 명의 이전 및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일을 부탁하면서 여러 서류들을 제공한 바 있고, 피고의 인감도장도 B에게 맡기게 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승소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는 등)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진정성립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피고는 B이 아무 권한 없이 갑 제15호증을 임의로 작성하고 위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피고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의 인영을 권한 없이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B이 피고를 잠칭하는 여성을 대동하여 위와 같이 서명하게 하거나 날인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증인 I, 이 법원 증인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직원 J은 2016. 8. 20. 서울 은평구 K 소재 L매장 불광역점 2층에서 B, M, 원고 안산대리점 대표 I, 피고가 동석한 가운데 피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본인 확인을 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을 받고 인감도장을 날인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앞에서 든 증거, 제1심증인 I, 이 법원 증인 J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F에게 제1보증보험계약에

다른 보험금으로 2018. 4. 25.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후 2018. 5. 2. D로부터 4,500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금에 충당함으로써 원금 잔액은 149,995,00원인바,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피고는 F에 대하여 그 1/2에 해당하는 피고 부담부분, 즉 74,997,750원이 면책되었으므로 민법 제44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4,997,7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3.부터 피고가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제2보증보험계약 관련 구상금 청구

갑 제7호증의 2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갑 제12, 13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 이 법원 증인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갑 제7호증의 2는 피고에 의하여 직접 작성된 문서임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제1심 감정인 N의 필적감정결과, 제1심증인 M의 증언,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다.

① 갑 제7호증의 2에는 피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6. 8. 12. 피고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피고 소유 부동산목록을 수령했다.

③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참조).

2016. 8. 15. 원고의 홈페이지에서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계약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와 '심사용 동의서'에 대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

④ 제1심 감정인은 피고의 시필지, 피고가 제출한 다이어리와 평소 필적이라고 제출한 필적을 대조 필적으로, 갑 제7호증의 2, 갑 제11호증에 각 기재된 필적과 대조하여 동일인의 필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으나, 위 대조 필적은 그 제출 경로 및 자료의 성격상 피고의 평소 필적으로 보기 어렵고, 여기에 갑 제7호증이 2에 기재된 피고의 필적과 작성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작성된 갑 제15호증의 피고의 필적 중 특히 서명 부분은 육안으로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는 점을 덧붙여 보면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⑤ 2016. 8. 20. 서울 은평구 K 소재 L매장 불광역점 2층에서 원고 안산대리점 대표 I이 연대보증인으로 참석한 피고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본인 확인을 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을 받았다.

⑥ 피고는 2018. 9.경 B을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B과 대질조사 진행 중 돌연 고소를 취소하였다.

위와 같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앞에서 인정한 증거, 제1심증인 I, 이 법원증인 J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D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는 원고가 F에게 지급한 보험금 190,976,816원(186,540,289원 + 3,690,618원 + 745,909원) 및 이 중 제1심 청구금액 186,540,289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2021.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확장한 4,436,527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9. 9. 11.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0. 6.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최은주, 판사 정 원, 판사 김유성